

- 다. 정당의 결성 및 가입 관련 행위,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반대하기 위한 행위 금지 ('국가공무원법' 제65조)
- 라.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행위 금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 마. 동의 없이 타인(유아·학생, 동료 교직원, 보호자 등)이 등장하는 콘텐츠를 제작·공유함으로써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행위 금지
- ☞ 영상·사진 텁재 시 출연자의 동의를 받았음을 자막 처리 등을 통해 명시해야 함
- 바. 유아·학생 평가의 공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내용의 콘텐츠 텁재 금지

관련 질의·응답

Q1

근무시간 중 교사들의 개인 일상을 담은 유튜브 브이로그 촬영은 가능한가요?

A1

교원은 근무시간 중에 직무에 전념할 의무가 있으며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행위를 해서는 안 되므로, 직무와 관련 없이 이루어지는 브이로그 촬영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다만, 소속 기관, 교육부·교육청 등의 요청에 따라 업무의 일환으로 브이로그 등 영상을 촬영하는 것은 가능하며, 소속 기관의 장(학교(원)장 등)에게 사전 보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2

인터넷 개인 미디어 활동이나 SNS 활동 시, 물품이나 금전을 받고 작간접 광고를 하거나, 후원 수익을 취할 수 있나요?

A2

할 수 없습니다. 업체 등으로부터 협찬을 받아 특정 물품을 홍보하는 행위(예: 작간접광고) 또는 인터넷 개인 미디어 등을 통해 후원 수익을 취득하는 행위는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금지되어 있습니다.

Q3

겸직 허가 대상이 아닌 인터넷 개인 미디어 활동을 하는 경우에도 콘텐츠에 유아·학생이 등장할 때 초상권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A3

유아·학생이 등장하는 영상·사진을 촬영할 때는 겸직 허가 여부와 무관히 초상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겸직 허가를 받기 전에는 동의서를 받아 보관해두고, 겸직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보관해둔 촬영 및 초상권 활용 동의서를 겸직 허가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Q4

공공 계정에 유아·학생이 등장하는 콘텐츠를 텁재할 때도 초상권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A4

초상권은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고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로 의미하므로, 공공 계정에 콘텐츠를 텁재하는 경우라도 유아·학생이 등장하는 경우라면 초상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Q5

운영 중인 유튜브에 촬영 및 초상권 동의를 받지 않은 유아·학생이 등장하는 콘텐츠가 텁재되어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5

출연 유아·학생의 신분이 특정되지 않도록 화면 인물 불투명 처리 등을 하여 재覃재하거나, 해당 콘텐츠를 삭제해야 합니다.